

서울특별시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(구 서울원스톱지원센터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86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6월 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폭력피해여성 등의 의료, 수사, 상담을 위한 지원시설로서,
- 폭력피해여성 등에 대한 의료, 수사, 상담 등의 지원으로 침해구제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58
- 시설규모 : 건물 122m²
- 설립일자 : 2008. 1. 21.
- 근거법령 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8. 1. 1. ~ 2020. 12. 31.)
- 위탁업무 :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
- 소요예산 : 321,486천원 (2017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 -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(2017. 5.)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- 3차 : 2014. 1. 1. ~ 2017. 12. 31.
(3년, 국립경찰병원)
 - 2차 : 2011. 1. 1. ~ 2013. 12. 31.
(3년, 국립경찰병원)
 - 1차 : 2008. 1. 21. ~ 2010. 12. 31.
(3년, 국립경찰병원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市 직영시 근무연한 등 동일조건의 인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
- 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의료행위, 수사조사, 치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권한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바,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 -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기타사항

-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(2017. 5.)